



# 사례 속의 법률 채권자 취소권



본래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는 민법상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법인이 돈을 빌려 갚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법인의 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만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잘 돌아갈 때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회사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일 때 문제는 발생한다. 팔리지 않는 재고는 쌓이고 매도한 물건대금은 회수되지 않아 현금 흐름이 악화되어 곧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예감이 오면,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영자들의 경우 ‘회사는 망하더라도 내 재산이라도 지키자.’는 생각에서 재산을 하나하나씩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채권자로서 경영자가 빼돌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사해행위’를 돌려 말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판례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즉,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11. 28. 95다27905).

예를 들어, 철근 매도를 업으로 하는 A라는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의 대표는 甲이다. A는 철근을 B라는 제

철회사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A의 B에 대한 매입대금의 지급보증을 C라는 은행이 하고 甲은 위 지급보증상의 약정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한다. 그런데 ① A라는 회사의 B에 대한 대금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A는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고(사해행위), 그 후 ② A는 B에 대한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보증사고의 발생) B는 C에 대하여 위 보증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위 철근미지급대금을 청구한다. 그 이후 ③ B는 지급보증상의 약정채무에 기하여 B가 C에게 지급한 금원을 甲에 대하여 청구한다(피보전채권의 발생). 실제 우리의 기업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다.

위와 같은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시기가 사해행위보다 뒤라고 하지만, 이미 사장님의 재산을 빼돌리는 시기에 지급보증상 약정채무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포괄근보증이 있고, 그 가까운 장래에 대금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곧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C은행이 甲에 대하여 청구하리라는 고도의 개인성이 있으며, 실제 그 이후 C은행에서 甲에 대하여 위 포괄근보증에 기하여 청구를 하였다면, A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행에서 甲에 대하여

여 위 포괄근보증에 기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C은행은 甲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부동산을 채권자 취소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장님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모님(수익자)<sup>1)</sup>이 사장님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당시 '위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모르고 있다(선의)는 사실을 입증하면 위 채권자 취소권은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이 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가족 또는 친지가 아닌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자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으로 보아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1) 채권자 취소권에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자를 '수익자'라 한다.



#### 법률사무소 '온' 변호사 이호진

전화번호 : 02-6203-0703, 이메일 : ephitor@naver.com

- 사법연수원36기
-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 변호사(전)
- 서울중앙 국선전담변호사
- 現)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위원